

의안번호	제 319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월 일 (제278회)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발 의 자	장주식 의원외 6인
발의연월일	2009. 3. 6.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1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9년 3월 6일

제안자 : 장주식, 연만흠, 강태원

김환동, 박재국, 이필용
조영재의원 (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에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
근거조문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(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의 설치)의 삭제로 폐지하려는 것임.

조례 제

호

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조례 제3065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